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3년 8월 11일

청 원 인

성 명 : 송찬우

주 소 :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

(인) 외

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8동 1406호
	성명 : 송찬우
건명	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대한 청원
소개년월일	2013년 8월 11일

소개의견

청원인 송찬우 외 8명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.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는 2013년 8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『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』이었습니다.

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『현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현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기보다, 오히려 상호 견제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.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 간의 부당한 하도급거래의 손해배상에 앞서 사전적인 조정이 있도록 한다.』는 것입니다.

청소년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하도급법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(손해배상 책임)

-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정과정을 거친 후, 조정이 결렬될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

신구문대조표

현행	개정문
<p>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</p>	<p>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<u>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정과정을 거친 후, 조정이 결렬될 경우</u>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</p>

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.

청원서

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

1. 제안이유

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실현을 위해 2013.5.28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. 하지만 이 법안의 개정안의 일부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 개정안보다는 직접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호 화합적인 법률안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2. 주요골자

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정과정을 거친 후, 조정이 결렬될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

□ 신구문대조표

현행	개정문
<p>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</p>	<p>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<u>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정과정을 거친 후, 조정이 결렬될 경우</u>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</p>

청원인 성명 : 송찬우

청원인 주소 :

청원인 전화번호 :